



법무법인(유)
율촌

Copyright 2025 Yulchon LLC

법무법인(유) 율촌
공정거래그룹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목 차

I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	3
1. 주요 정책 요약	3
2. 정책 세부 내용 및 관련 입법	4
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4
②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 추진	7
③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	7
3. 기업 입장에서의 시사점	9
II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제고 및 권익 향상	10
1. 주요 정책 요약	10
2. 정책 세부 내용 및 관련 입법	11
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11
② 기술탈취 근절	12
3. 기업 입장에서의 시사점	15
III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16
1. 주요 정책 요약	16
2. 정책 세부내용	16
3. 기업 입장에서의 시사점	18
IV 민생 밀접분야 담합 감시 강화	20
1. 예상 정책 방향	20
2. 기업 입장에서의 시사점	20
V 공정위 조사인력 충원 및 집행 강화	21
1. 예상 정책 방향	21
2. 기업 입장에서의 시사점	21

1. 주요 정책 요약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피해 방지법 도입으로, 시장의 자정기능 강화·경쟁 촉진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 재창출 ✓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제도 재정비	성장-공정경제-04 ¹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 추진]	
②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 ✓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 등	성장-공정경제-05
③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강화	성장-공정경제-05
④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수준 제고 ✓ 가짜뉴스 모니터링 및 이용자 신고·처리 제도 도입 ✓ 디지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조치, 정부 보고, 장애 원인 고지 등 의무화 ✓ 국가적 참사, 사회 재난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명예 보호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제재 수준 강화	성장-공정경제-05
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 개선 ✓ 공정한 망 이용 계약 제도화	성장-공정경제-05

¹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참조 목차. 이하 같음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

⑥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

- ✓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 방통위·공정위로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정비

성장-공정경제-07

2. 정책 세부 내용 및 관련 입법

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 새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장 속에서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²
-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 EU DMA, 영국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등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소상공인 상생 방안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음
 -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원칙은 EU의 DMA와 유사하게,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³'를 지정하여 사전규제하는 방안으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음
 - ※ 관련 입법안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2024. 6. 12), 민형배의원 대표발의(2024. 6. 24), 김남근의원 대표발의(2024. 7. 5), 박주민의원 대표발의(2024. 7. 5), 김현정의원 대표발의(2024. 8. 6), 서영교의원 대표발의(2024. 8. 9) 등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강민국의원 대표발의(2024. 10.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² 국정기획위원회,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2025. 6.)', 75면

³ EU DMA에서 지정하는 Gatekeeper와 유사한 개념

-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플랫폼 법안들은 크게 독과점 규제법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거래공정화법(갑을관계법)으로 구분됨. 독과점 규제법은 주로 대형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 등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거래공정화법은 주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갑을관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법(가칭)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 거래금액, 시장점유율, 월평균 이용자 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경쟁제한행위 규제 강화	▪ 사전 지정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검색 결과 우선 노출)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입점업체에 다른 플랫폼보다 더 좋은 조건 요구)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에 동시 입점 제한)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위반행위 입증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지도록 함
갑을관계 규제, 입점업체 권익강화 및 단체 구성권 보장	▪ 계약서 교부, 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정산기한 설정 등 ▪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갖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유사한 단체교섭 보장

※ 출처: 언론매체 보도 종합

- 2024년 12월 개최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사전지정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남근 의원안과 '사후추정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민국 의원안이 접점을 찾지 못하였으나, 새 정부 하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전규제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한편 사전지정제와 사후추정제 간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여 진행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김남근 의원안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 도입	▪ ▲발행주식 평균시가총액 15조 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 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이용사업자 수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장지배적지위 요건 충족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 사전 지정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검색 결과 우선 노출)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입점업체에 다른 플랫폼보다 더 좋은 조건 요구)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에 동시 입점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위반행위 입증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지도록 함

○ **대통령 공약집에는 독과점 플랫폼 사전 규제와 갑을관계 규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대내외 이슈로 갑을관계 규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독과점 플랫폼 '사전지정제'는 규제 대상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 다수가 거론되고 있어, 미국 정부와 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에 대한 미국 국회·정부의 반응 >

주체	공식 반응
미국무역대표부 (USTR)	▪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의 경우 다수의 미국 대기업 및 한국의 두 대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제외됨을 문제삼음
의회(하원)	▪ 캐롤 밀러 공화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법안을 시행할 경우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는 '미국-대한민국 디지털 무역 집행법'을 발의
미국 상공회의소	▪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 기업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양국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
서비스산업연합 (CSI)	▪ "한국의 규제안은 미국 기업에만 과도하게 적용되고, 이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USTR에 한국정부에 규제철회를 촉구해달라고 공식 요청

※ 출처: 언론보도 종합

-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법이 이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EU DMA의 게이트키퍼와 동일한 사전지정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IT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따라서 대내외적인 이슈를 고려할 때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사전지정제는 도입 시기가 조절될 가능성이 높으며, 플랫폼-입점업체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
- **플랫폼에 적합한 예방적 규제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시장조사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위 내 관련 조직과 조사 인력 확충, 디지털 환경에 맞는 조사권한 강화 등 제도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현실화 등 플랫폼 경쟁환경에 적합한 규제 체계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②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 추진

- 국내 망이용료 의무화 법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 등 글로벌 테크·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 또한 추진될 수 있음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합의로 보류된 망이용료 의무화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한 망 이용계약 제도화가 실현될 경우, 국내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계 콘텐츠 기업에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는 비판적 의견도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될 수 있음
 - 플랫폼 이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짜뉴스 모니터링, 참사·재난 피해자 온라인 명예보호, 디지털 서비스 장애발생시 조치·보고·고지 의무화 및 다크패턴에 따른 소비자 피해방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새 정부의 정책 차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세심한 모니터링 필요

③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

-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한 배달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정책 과제를 제시
 -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방지 및 입점업체(자영업자) 보호를 목표로 배달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중개수수료 상한 설정 및 입점업체 간 수수료율 차별 금지 법제화,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⁴
- 기존 자율규제 방식인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중개수수료 인하 및 차등수수료제 등 상생안을 마련하였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비판이 있었음
 - 이에 법 개정을 통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됨
-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다양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⁴ 국정기획위원회,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2025. 6.)', 76면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2024. 11. 27.)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상한제 도입 ▲거래상대방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2025. 4. 28.)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은 ▲공정위가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고시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구체적 산정기준 공개 ▲입점업체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관련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

의안	추진 현황	주요 내용
박주민의원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소관위심사	▪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 거래상대방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 신설
이강일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소관위접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고시 ▪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거래조건의 구체적 산정기준 공개 ▪ 온라인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 부여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갑을관계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부내용 중 하나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3. 기업 입장에서의 시사점

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관련

- ✓ 다수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규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 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점업체와의 거래관계 및 협상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 추진 관련

- ✓ 국내 매출액 신고 의무, 망 이용 계약 제도화, 인앱결제 강제 금지 및 다크패턴 규제 등은 사실상 해외 플랫폼 기업에 초점을 둔 규제이며, 국내 진출 시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기업들은 한국 특유의 규제환경을 반영한 별도 거래조건 설정, 약관 정비, 수익구조 재설계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규제당국과의 협의 채널 확보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③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 관련

- ✓ 배달시장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 및 차별금지 규제가 우선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배달·중개 플랫폼 기업은 중개구조 및 수수료 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업계 협의체 또는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통해 기업 입장을 제도화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요 정책 요약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①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입 강요, 가격 차별 통한 비용 전가 방지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 유도 ✓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상력 부여 ✓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	성장-공정경제-06 행복-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 제고-04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법제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우려 불식 및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성장-공정경제-01
③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조건 등 단체협상권 부여 ✓ 대·중소기업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 해소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거래기반 확보	성장-공정경제-01
④ 지역 중소기업 정책에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확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역량 강화 및 지역 주력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공동사업 일자리 지원, 협업거래, R&D 등 지자체 및 지방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 마련	성장-공정경제-01
⑤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 등 경비 포함하여 수탁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성장-공정경제-01
⑥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위해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	성장-공정경제-01
⑦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 건설공사 영역간 경쟁체제 불공정 개선,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폐지 등 시공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성장-성장 기반 구축-22

✓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등 사회적합의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 건설사업자 관련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등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기술탈취 근절]	
⑧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 ✓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조사 통해 증거 수집하여 피해를 입증	성장-공정경제-03
⑨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 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성장-공정경제-03
⑩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피해기업의 법률자문, 소송 지원,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활용	성장-공정경제-03
⑪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효성 강화 ✓ 위·수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구제 등 피해구제 강화	성장-공정경제-03

2. 정책 세부 내용 및 관련 입법

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 새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겪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힘⁵

-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을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가맹점주의 단체 등록 및 단체협상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있음
- 새 정부는 건설 산업의 중요성 및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 관련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임

⁵ 국정기획위원회,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2025. 6.)', 72면

○ 위와 같은 내용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개정 또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신규 법률 제정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관련 법안 상당수가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거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어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이러한 제도 도입은 열위 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다수 단체의 난립, 대표성 결여, 공급자 또는 플랫폼사업자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 거래 구조의 복잡화 및 비용 증가 등이 우려되어 현재 찬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 한편 새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우려를 불식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법제화겠다는 공약을 내세움

- 현재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제116조~118조)는 한정적인 경우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실제 적용 제외가 인정된 사례도 많지 않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입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규제도 보다 구체화될 예정임

- 현행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자재 비용만 연동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에너지 요금 등 경비도 연동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나아가 새 정부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i) 미연동 합의를 강요 또는 유도하는 행위, (ii) 계약금액을 1억 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어 계약하는 행위, (iii) 계약기간을 90일 이내의 단기로 나누어 계약하는 행위 등 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② 기술탈취 근절

○ 새 정부는 기술탈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책목표를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 공약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 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및 피해구제지원 강화 등 제도개혁 등을 제시함⁶

⁶ 국정기획위원회,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2025. 6.)', 71면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관련 입법안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2025. 3.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 간 증거자료를 상호 교환·제출하도록 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입증에 어려움을 겪던 기술탈취·특허침해 등 분쟁에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 자료 수집 등이 가능
-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피해자 권리구제 강화에 필요한 기술 탈취, 특허침해 등에서 입증 부담이 완화되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약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전망

< 새 정부의 공약 관련 주요 코멘트 >

날짜	발언 내용 요약
2024. 11. 20.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막기 위해 가해 기업에 소송 전 증거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마련
2025. 05. 14.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
2025. 05. 20.	■ 기술 유출 정황 발견 시 무작정 재판을 열기에 앞서 자체 포렌식 등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문제나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
2025. 05. 21.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 출처: 언론매체 보도 종합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공정 시장구조 확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나, 민감정보 관리방안, 비용 및 시간 증가, 제도 남용 및 소송 지연 등 우려도 있는바, 제도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와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후 시사점 >

구분	주요 내용
장점	- 재판 전 증거 강제 공개로 실질적 권리구제 가능 - 기술유출 등 피해기업 보호 및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 -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분쟁 해결 가능
단점(우려)	- 영업비밀·기밀 유출 위험 - 디스커버리 위한 인력, 소송 비용, 기간 증가 - 경영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 남용 우려 - 데이터의 위변조, 접근성, 복원 문제 - 실효성 있는 제재 미흡

3. 기업 입장에서의 시사점

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 ✓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상대적 약자의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체등록 및 단체협상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기업은 협상 요청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와 대응 프로세스의 표준화,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를 통해 복수 단체의 협상 요청에 따른 실무 부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특히, 협상 거부 시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식 협의 요청에 응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담합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될 경우, 대기업은 집단적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및 구매 전략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 ✓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폭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하도급 비용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사업자들의 납품 대금 인상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바, 하도급 계약 조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또한 미연동합의 강요, 계약 쪼개기 등 탈법 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하도급법상 탈법 유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기술탈취 근절

-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 영업비밀 유출, 비용 증가, 소송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제도화 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은 사무실·전산 시스템 등에 대한 강제 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적인 대응 전략과 내부 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 기술자료 수령 및 활용 시에는 하도급법상 요구절차 및 서면구비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부 임직원 교육과 통제시스템을 통해 기술유용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정위 또는 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제도, 피해구제기금 확대 등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소송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은 이에 따른 방어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법적 리스크를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 ✓ 공정위의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확보하여 하도급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한 업체임을 홍보하고 직권조사 면제를 받는 전략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Ⅲ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1. 주요 정책 요약

①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 해소	성장-공정경제-11
②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 합병 과정 등에서 일반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 책임 강화	성장-공정경제-12
③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점검 강화 ✓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성장-공정경제-12

2. 정책 세부 내용

공약	주요 내용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주주 전체 이익 고려 원칙 제시 -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 -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 해소
자본·손익거래 등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인수·합병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 기업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도입 -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일반주주가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 도입 -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통령의 제1호 경제관련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상법 개정안 대비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주주환원 강화 등 강화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새 정부 공약과 기존 상법 개정안의 차이점 >

구분	기존 상법 개정안 (2025년 3월 국회 통과안)	새 정부 상법 개정안 (2025년 4월 공약)
이사 충실의무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동일
전자주주총회	상장사에 의무화	동일
집중투표제	권장 또는 일부 적용, 의무화 미포함	의무화 (소액주주 이사 선임 실질화)
감사위원 분리	일부만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자사주 소각	별도 규정 없음	자사주 소각 원칙화 (주주환원 강화)
쪼개기 상장	일반주주 보호 규정 미흡	신주 우선배정 등 일반주주 보호 강화
불공정행위	기존 법률로 처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 강화

※ 출처: 언론보도 종합

- 상법 개정 관련 공약은 1,400만 이상의 소액주주를 겨냥한 공약인 만큼 법안의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새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집약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의 1호 경제 관련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안의 수정보다는 이를 보완할 다른 입법이 진행될 수 있음**

- 개정안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집중투표제 의무도입으로 소액주주의 기업경영 영향력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배임죄로 볼 수 있음
- 또한 이사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상법상(제622조) 특별배임죄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에 찬성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총장이 기업대상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새 정부 또한 배당소득세와 더불어 배임죄 폐지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후 개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음

○ **상법 개정안 입법 시 기업은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지배구조 개편 압력, M&A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상법 개정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법적 리스크 부담, 지배구조 개편 압력, 자본금 등 재무전략 수정, R&D 투자 등 혁신역량 저하 등 관련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

< 상법 개정에 따른 주요 리스크 요인 >

리스크 요인	주요 내용
법적 리스크 증가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배임죄 소송 급증 예상 - 소액주주가 집단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지배구조 개편 압력	-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소액주주 대표의 이사회 진출이 가능하게 되며, 동시에 기존 경영진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음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소액주주의 기업 내부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재무전략 수정	-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주환원 압력이 커져, 기업의 자본금 관리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 - 합병·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장치 강화로 M&A 비용이 증가
혁신 역량 저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며, 주주의 기업 감시 강화로 혁신적인 R&D 투자 및 신사업 진출이 위축될 수 있음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관련 공약은 상법 개정과 유사한 정책 공약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풀이됨

- 손익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는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임. 다만, 새 정부는 2018년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단순히 확대하기보다 해외 계열사를 통한 우회 출자, 내부거래의 성격 변경 등 편법적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촘촘한 규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새 정부는 계열사 간 합병 시 법정 산식이 정하는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격에 의한 합병비율, 주식매수가격 등을 정하도록 규정할 가능성이 높음

3. 기업 입장에서의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 상법 개정은 새 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액주주 권한 강화, 독립이사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업은 이사회 구성 다각화, 주주 소통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배구조 규제에 대비하고, IR 활동 및 ESG 전략 강화를 통해 장기적 주주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상법 개정과 맞물려 계열회사간 지원행위와 관련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거래 상대방 선정, 계약조건 협상 및 검토 등 단계별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 합리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근거자료들을 보존하는 등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 특히, 우회거래 등 편법적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바,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상 정책 방향⁷

- 대통령은 2025. 6. 9.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물가 문제를 언급하며, 현황 및 대책 보고를 지시
 -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맥주, 라면, 계란, 닭고기 등은 생필품 분야이자 물가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로, 이들에 대한 물가 감시는 민생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할 것으로 예상
 - 위 품목들의 시장가격 감시와 더불어,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업자 간 담합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존재

2. 기업 입장에서의 시사점

민생 밀접분야 담합 및 물가 감시 강화 예정

- ✓ 맥주, 라면, 계란, 닭고기 등은 물론, 기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물가 감시 및 담합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민생 밀접분야의 기업들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제재에 신속히 대응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원재료 값 상승, 환율 상승 등 자료를 잘 구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⁷ 정책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공정위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1. 예상 정책 방향

○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시 및 집행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언급⁸

- 조직과 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인력, 기술적 도구(예: 디지털 시장 데이터 분석 도구), 전문 지식 등에 대한 투자
- 인력 확충은 특히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 속도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주로 경제분석 및 AI/디지털(플랫폼) 산업 분야의 인력 및 조직 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기능을 재통합하고, 플랫폼국, 경제분석국 등 새로운 국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킬러인수' 판단 기준의 명확화, 예방적 심사와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위한 제도적 보완

2. 기업 입장에서의 시사점

공정위 조사인력 충원 등 집행 강화 예정

- ✓ 기업들은 새 정부 하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위 조사 등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내부 준법통제 프로세스 및 기능을 강화하고, 임직원에게 대한 준법교육을 확대하며, 현장조사 대응 절차 마련 등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⁸ 국정기획위원회,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2025. 6.)', 75면

CONTACT

윤정근	변호사	02-528-5179	jkyun@yulchon.com
박성범	변호사	02-528-5840	sbpark@yulchon.com
정세훈	외국변호사	02-528-5923	cschung@yulchon.com
황윤환	변호사	02-528-6464	yhhwang@yulchon.com
정성무	변호사	02-528-5724	smjung@yulchon.com
한승혁	변호사	02-528-5633	shhan@yulchon.com
김규현	변호사	02-528-5860	khkim@yulchon.com
류송	변호사	02-528-6473	sryu@yulchon.com
이승재	변호사	02-528-5590	sjlee@yulchon.com
최유미	변호사	02-528-6442	ymchoi@yulchon.com
강성일	변호사	02-528-5920	sikang@yulchon.com
이우열	변호사	02-528-5906	wylee@yulchon.com
박양진	변호사	02-528-6472	yjpark@yulchon.com
이충민	변호사	02-528-5750	cmlee@yulchon.com
김건웅	변호사	02-528-5963	kwkim@yulchon.com